경산지역대학연합 학점인정 및 교류협약서

경산대학교 · 경일대학교 · 대구대학교 ·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· 영남대학교(이하 경산지역대학연합이라 한다)는 지역대학간 학점인정 및 교류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상호발전을 도모하며,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협의하고 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(목적) 본 협약은 경산지역 대학연합 회원교의 학부간 학점의 상호인정 및 학생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상호교류) 학점인정을 위한 상호교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정규학기중 전체과목의 수강 및 학점교류
2. 정규학기중 일부 특정과목의 수강 및 학점교류
3. 방학중 특별히 개설한 계절강좌의 수강 및 학점교류

제 3조(교류학생의 자격과 의무) ① 회원교간 학점인정을 위한 교류학생의 신청자격은 소속대학에서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한다.

② 학점교류 신청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4조(신청 및 승인) ① 본 협약에 의하여 학점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양식의 지원서(수강허가신청서)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소속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교류대학의 학점취득을 위한 수강신청은 수강할 대학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졸업 최종학기는 학점교류 신청을 할 수 없다.

③ 동협약서 제2조의 수강신청은 매 학기당 계절강좌를 포함하여 18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.

제 5조(교류기간 및 학점) ① 교류학생의 수강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, 동협약서 제2조 제1호에 의한 교류기간은 재학기간중 통산 2개 학기 이내로 한다.

② 교류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6조(학점인정) 학생이 회원교에서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소속대학의 학칙 및 인정절차를 거쳐 총장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 7조(학생지도 및 관리) ① 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회원교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.

② 회원교 상호간은 교류학생에게 교류기간동안 소속 재학생과 동등하게 수업과 복지시설(도서관, 정보통신시설 및 기계기구 등) 이용의 편의를 제공한다.

제 8조(수강료) 교류대학의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학점단위로 하며, 학점당 수강료 책정, 지불방법 및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9조(운영위원회) 회원교 상호간의 원활한 학점교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산지역대학연합으로 구성된 학부 학점교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기타)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소속대학과 회원교 상호간의 학칙 및 내규를 준용하며, 상세한 내용은 운영위원회 협의에 의한다.

제11조(시행일)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.

이 협약서는 5부 작성하여 각 대학별로 1부씩 보관한다.

1998년 6월 22일

경 산 대 학 교 총 장 직무대행 배 만 종 배만종

경 일 대 학 교 총 장 이 효 태 이효태

대 구 대 학 교 총 장 박 윤 흔 박윤흔

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총 장 김 경 환 김경환

영 남 대 학 교 총 장 김 상 근 김상근